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1
----------	-------

제출년월일 : 2014.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여 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감면 조항 삭제(안 제7조)

- 「도로법」 제4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점용료의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 조례에 점용료 감면 규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수정

- 「도로법」등 이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수정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개정근거

「도로법」 제42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6.(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3.12. 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에 따라”로 하고,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를 “부과·징수에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5항제9호”를 “제28조제5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을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를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로, “생활정보지회사”를 “생활정보지 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3조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각각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0조”를 “제80조제1항”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점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점용료 및 변상금”을 “점용료 등”으로,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를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80조”를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재 위탁”을 “한 차례만 재위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 중 “10.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u>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규칙에 따라</u> ----- ----- ----- ----- <u>부과·징수에 필요</u>----- -----.</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u>제28조제5항제9호</u>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탑, <u>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 <li>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u>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u>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u>는 <u>생활정보지회사</u>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li> </ol>	<p>제2조(도로점용허가) ----- ----- ----- -- <u>제28조제5항제10호</u>----- ----- ----- ----- ----- ----- 1. ----- <u>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u> ----- ----- 2. -----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u> -- -----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u>생활정보지 회사</u>-----</p>

에 한한다.

3.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제41조제3항 -----

-----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자에게-

자에게-----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  
-----  
-----  
-----  
-----  
-----  
-----  
-----  
-----  
-----  
----- 3개월 -----  
-----.

④ -----  
-----  
----- 1개월 -----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  
----- 제80조제1항 -----  
-----  
----- 점용료 등 -----  
-----.

② ----- 점용료 등 -----  
-----  
----- 제30  
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  
자를 붙여야 -----  
----- 제80조제1항 -----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  
-----  
<삭 제>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9조의3(점용물의 철거 등)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생략)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

-----

-----

-----

-----

----- 제21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점용물의 철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한 차례만 재위탁 -----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0.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생)	략)	(생) 략)

제11조의2(준용규정) -----  
-----  
- 관하여 -----  
-----  
----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